구매업무 규정

제정일: 2006. 12. 28 개정일: 2020. 4. 16

제 1 장 총 최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(이하 "본교"라고 한다)에 필요한 물품 구매, 제작, 수리, 재화와 용역, 시설공사 등의 발주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물품"이라 함은 원자재, 기자재, 가공품, 소모품, 외국산 기자재 등을 말한다.
- 2. "기술용역"이라 함은 인력공급, S/W개발, 민원업무 대행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- 3. "시설공사"라 함은 전기, 설비, 토목, 건축 등 제반 공사를 말한다.
- 4. "제조"라 함은 인쇄물 제작, 전시장 제작, 도면에 의한 교구 및 비품의 제작 등 비기성품을 말한다.
- 5. "구매"라 함은 물품구매 계약, 시설공사 계약, 기술용역 계약, 제조 계약, 외자 계약, 단가 계약, 매각 계약, 임대차 계약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.
- 6. "공급지정품목"이라 함은 다품종 소액 구매로 반복 구매 및 긴급처리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공급업체를 정하여 시장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품목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.
 - 가. 문방구류, 잡철물, 유리, 목재·합판
 - 나. 시약, 초자류
- 7. <삭제 2020.04.16.>
- 8. "요청부서"란 물품구매, 기술용역, 공사 등을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기초자료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거점부서에 의뢰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9. "거점부서"란 요청부서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구매, 기술용역, 공사 등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하며, 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. 단, 제6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품목은 거점부서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.
 - 가.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: 프로그램 개발, 홈페이지 제작·리모델링 <개정 2013, 7, 24>
 - 나. 정보통신처 통신운영팀 :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장비 및 공사, 컴퓨터 및 주변기기, SW <개정 2013. 7. 24>
 - 다. <개정 2013. 7. 24, 삭제 2020.04.16.>
 - 라. 중앙도서관 정보자료팀 : 도서 및 비도서 <개정 2013. 7. 24>
 - 마.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 : 복지시설 임대차 계약 <개정 2013. 7. 24>
 - 바. 관리처 시설관재팀 : 공사, 복사기 및 기타 상기에 속하지 않는 구매 <개정 2013. 7. 24>
- 10. "추정가격"은 물품구매, 기술용역, 공사발주를 위하여 구매부서(재무팀)에서 시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가격(VAT 포함)으로 입찰여부의 판단과 예정가격조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는다. <개정 2013. 7. 24>
- 11. "예정가격"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추정가격을 근거로 총장(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)의 가격결정을 득하여 개찰장소에 비치

하여 두는 가격(VAT 포함)을 말한다.

- 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 각 기관의 모든 구매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원칙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.
 - 1. 우편물 발송업체의 선정 및 대금
 - 2. 학생회, 원우회 등의 자치회비 예산에 의한 구매
 - 3. 법인, 외부단체와 공동계약(컨소시엄) 및 구매 시 계약 주관 기관이 광운대학교가 아닌 경우
 - 4. 행사용 기부금에 근거한 수지대응 예산에 의한 구매
 - 5. 스포츠 후원계약 및 동 계약에 의한 구매

제4조(담당부서) 본교에서 행하는 구매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3. 7. 24> 제5조(기술검토위원회) 세부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검토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매업무 절차

- 제6조(구매요청) ① 구매요청은 요청부서에서 구매의뢰서를 작성(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구매 의뢰 포함)하여 구매부서(제2조 제9호에 해당되는 품목은 거점부서를 경유)에 접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.
 - 1. 단가계약 품목 및 기자재 수리, 공급지정 품목 : 학과 및 행정부서
 - 2. 시약, 소자, 실험용기, 기타 소모성 실험재료 : 학과 및 교학팀 <개정 2013. 7. 24>
 - 3. 단가계약 품목(도서·비도서) 및 컨소시엄 공동구매 품목(도서, DB 외): 중앙도서관
 - ② 구매 요청 시에는 품명, 규격, 수량, 용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고, 시방서, 카탈로그, 도면, 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, 특히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거점부서는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 - ③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, 당해 계약은 계약만료일자로 자동 해지한다.
 - ④ 요청부서는 단일 품목으로 1,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 시 품질·성능·효율 등이 유사하나 제조사가 다른 2 이상의 제품을 조사하여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판매독점 제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⑤ 구매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.
 - 1. 구매 법정 소요기간, 납기, 예산집행기한을 고려할 때 기간 내 수행이 불가능한 구입 요청
 - 2. 사업승인 및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 조치된 구매 건
 - 3. 건물용도와 맞지 않는 업종의 임대 계약
- **제7조(구매방법)** ① 구매요청을 받은 구매부서는 적절한 구매방법을 검토한 후, 경쟁계약, 수의계약,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.
 - ② <삭제 2020.04.16.>
- **제8조(예정가격 결정 및 비치)** ① 추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정한 추정금액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구매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조사하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총장(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)의 가격결정을 득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구매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
 - 2. 전문 가격조사 기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
 - 3.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
 - 4. 신품 개발 중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, 공사,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

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

- 5. 시설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 총장이 인정한 가격
- 제9조(예정가격 작성의 예외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관련 법률에 정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
 - 2.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
 - 3.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경우
 - 4.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
 - 5.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- 제10조(계약상대자 선정)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정한 추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,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납품업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1조(선금의 지급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그 성질상 선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계약금액이 3,000만원 이상인 구매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 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
 - ② 선금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, 계약상대자는 선급금 및 이자(선급금의 10%)를 합한 금액으로 선급금지불이행보증보험증권과 입금계좌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③ 선급금지불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④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 계약상대자는 본교에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검수) ① 구매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, 검수요 청서를 작성하여 검수부서(시설관재팀)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. <개정 2013. 7. 24>
 - ② 검수절차를 마친 물품은 비품 등록, 입고 등의 절차를 밟아 요청부서에 인계한다.
- 제13조(대가의 지급) ①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연간단가계약, 유지보수계약 등 장기계약 체결 후 대금지불조건에 따른 계약금의 지불은 요청부서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공사, 물품의 제조·구매, 용역 등 단기계약에 따른 선급금, 중도금, 잔금은 결과물을 첨부하여 요청부서에서 재무팀으로 지불요청을 한다. <개정 2013. 7. 24>
 - ③ 외자 구입에 따른 물품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고, 통관 완료 후 정산한다.

제 4 장 입찰 및 낙찰

- 제14조(경쟁입찰)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한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구매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우량거래처등록제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등록된 분야의 경우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5조(입찰참가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 - 1.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·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
 - 2. 당해 입찰에 필요한 허가, 인가,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

- 3.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것
- ②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.
 - 1.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
 - 2.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입찰 서류의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
 - 4.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배한 경우
- ③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필한 경우, 제2호 또는 제4호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입찰참가신청서
 - 2. 사업자등록증
 - 3.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)
 - 4. 인감증명서
 - 5. 사용인감계
 - 6. 납품실적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증명(필요시 제출)
 - 7.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
- 제1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없이 1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
 - 2.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
 - 3.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
 - 4.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
 - 5. 감독 또는 검사, 검수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
 - 6.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7. 자격에 관한 서류,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
- **제17조(입찰공고)** ① 경쟁입찰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시행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- ② 입찰의 공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며, 지명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18조(입찰공고 내용)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 - 2.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
 - 3. 현장설명 또는 사양설명의 장소, 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
 - 4.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
 - 5.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**제19조(현장설명)**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③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하고 참가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입찰유의서 등의 중낙)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유의서, 계약일반조건, 당해계약의 특수조건, 설계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, 이를 중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입찰보중금)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(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)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, 현금에 갈음하여 국공채, 이행보증보험증권, 건설공제조합, 전기공 사공제조합 등이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.
 - ③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한다.
- **제22조(입회 및 개찰)**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, 장소에서 거점부서 직원, 입찰자 및 입찰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.
 -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,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.
 - ③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 거점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개찰하여야 한다.
- 제23조(경쟁입찰의 성립)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.
- 제24조(낙찰자의 결정) ① 본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,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본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.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, 최저가격의 하한, 기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 - 1.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
 - 2. 입찰공고 또는 입찰명세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교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
- 제25조(수의계약) ① 경쟁계약에 의해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 그 소유자나 제작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, 청소경비 용역계약 및 인력공급 계약,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업무(입학업무 등) 중 요청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에도 총장(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)의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1. 특허품, 실용신안 등록품,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
 - 2.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이면서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
 - 3.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 우
 - 4. 특성상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이 될 경으
 - 5. 학술연구, 설계, 조사, 측량, 시설관리,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
 - 6.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
 - 7.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, 최초 경쟁입찰 시 정한 조건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경우
 - ②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한다.
- **제26조(단가계약)**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

제27조(계약서 작성)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, 계약금액, 이행기간, 계약보증금, 위험부담, 지체보상금,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

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.

- ②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계약금액이 3,000만원 이하인 경우
 - 2. 전기, 가스,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
 - 3. 사실상 구매활동이 종료(선구매)된 경우

제28조(계약보증금)

-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에 갈음하여 국공채, 이행보증보험증권, 건설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계약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종료일 60일 이후까지로 한다.
-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.
 - 1.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(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)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
 - 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
 - 3.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(당해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)를 제출하는 방법
 - 4. 연대보증인은 제22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- **제29조(하자보수보증금)**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일정기간의 제품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하 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**제30조(지체상금)**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**제31조(하자담보책임기간)** ① 제조구입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은 그 물품을 인수 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.
 - ②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제 보증금의 본교귀속) 제 보증금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.
- 제33조(계약의 해제·해지)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수요 부서장의 요청 및 총장(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)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단, 이때에는 그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킬 수 있다.
- 제34조(준용규정 및 적용우선순위) 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, 국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등과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에 관한 내규 및 표준계약서 등에 따른다
 - ② 본교 구매규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한 국가 계약법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기)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용도사무취급규정은 폐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